



(3) 탄소중립활동

탄소중립 기준

- 조세특례법에 따른 '신성장·원천 기술' 중 탄소중립 기술을 활용한 산업(제조업 또는 서비스업)
 - 기업활력법 시행령 별표2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을 활용한 산업(제조업 또는 서비스업)
- ※ 탄소중립 기술 해당여부는 미래사업재편판정위원회에서 판정

참고 ① 탄소중립 판단(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4)

제3조의4(탄소중립활동의 범위) 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을 활용하여 신제품·서비스를 창출하거나 공정을 전환하는 행위를 말한다. <개정 2024. 7. 9>

1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 7제13호에 따른 탄소중립에 해당하는 기술
2. 「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」 제2조제16호에 따른 녹색기술로서 별표2에 따른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

참고 ② '탄소중립'의 상세 범위

1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별표7 제2호에 따른 탄소중립에 해당하는 기술

구 분	분 야
1. 탄소중립(51)	가. 탄소포집·활용·저장(7) 나. 수소(5) 다. 신재생에너지(13) 라. 산업공정(13) 마. 에너지효율·수송(13)

* () 해당기술의 개수 * 위 표에 다른 신성장·원천기술의 유효기간은 2024년 12월 31일임.

2. 별표2에 따른 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

탄소중립 사업재편 인정 기술	
• 철강(3)	• 석유화학(2)
• 시멘트(1)	• 조선(1)
• 섬유(1)	• 수소(1)